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등 조사·공표〉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5165호)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5851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등 조사·공표	3

I. 개요

1.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1. 1.
- (3) 회 부 일 : 2024. 11.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2.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4. 11. 25.

(3) 회 부 일 : 2024. 11.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등 조사·공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용갑의원안은 2년마다, 한창민의원안은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현행	박용갑의원안	한창민의원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생략)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	④ ----- ----- ----- -----, 1 지급실태,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및 제3	④ ----- ----- ----- ----- ----- -----준수율, 사회복지사 등

다 조사·공표하여 야 한다.	항----- ----- ----- ---2년마다----- -----.	의 폭력 피해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011년 법 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4차례 실시되었음.

실태조사의 내용은 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등이었고, 이용자로부터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및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였고 28.5%는 폭력피해 경험이 있었음.
-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용자로부터 폭력을 포함한 위협을 경험한 종사자는 19.2%로 나타남.

-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조사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0.7%로 조사되었으며,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클라이언트 문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1) 유조안 외,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 2021,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불만,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 유무 >

(Base: 전체 응답자, n=4,210)

폭력 유형 구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났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체적 폭력	1,510	35.9	1,466	34.8	44	1.0
언어적 폭력	2,539	60.1	2,382	56.6	148	3.5
정서적 폭력	1,817	43.2	1,800	42.8	17	0.4
성적 폭력	969	23.0	960	22.8	9	0.2
경제적 폭력	1,110	26.4	1,065	25.3	45	1.1
의료적 위험	1,256	29.8	1,241	29.5	15	0.4
정보적 위험	1,354	32.2	1,310	31.1	44	1.0
폭력경험	2,987	70.7	2,670	63.4		

자료: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 원인>

(Base: 전체 응답자, n=4,210, 단위: 명, %)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 원인	빈도	비율
클라이언트의 문제	1,611	38.3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불만	816	19.4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낮은 권위	609	14.5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해소에서의 어려움	276	6.6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클라이언트 욕구의 미충족	197	4.7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	191	4.5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의사소통상의 오해	166	3.9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 미흡	135	3.2
폭력에 대한 시설/기관의 인식 부족	118	2.8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 경험 및 기술의 부족	47	1.1
서비스제공 과정상의 문제	44	1.0

자료: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²⁾, 이러한 사회복지사 수의 증가 추세 및 폭력 피해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관하여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사자의 근무제도 개선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권익침해 상담·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³⁾는 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파악 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폭력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표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의 전문성 및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9만 건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148만 건의 자격증이 발급되었음.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조사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도, 폭력 피해 실태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실태 조사와 달리 폭력 피해 사례가 일정한 유형·분류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피해 당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관련 유사 입법례 >

「평생교육법」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의 활동 및 근무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둘째, 조사·공표의 주기에 대하여 박용갑의원안은 2년으로, 한창민 의원안은 3년(현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공표의 내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시의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실태조사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를 예산·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⁴⁾이 있고,

3년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예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나, 정보의 시의성은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임.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정보를 활용하여 종사자의 보수수준, 근로여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종사자 단체(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 방식으로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있음.

□ 한편,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기존 실태조사의 시기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실태조사를 1년만에 다시 시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의 최초 시행 연도를 부칙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세부절차는 ① 조달청 계약 등 실태조사 추진 시작 절차(최소 2개월) ② 실태조사 및 결과 정리 절차(최소 6개월, 최대 1년) ③ 예산 편성 → 예산 집행 (최소 2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정 수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에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포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는 동의
- (주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일선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최소 3년의 주기가 필요하므로, 실태조사의 주기는 현행과 같이 3년이 적절함.
 - (부칙)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태조사 시 시행일에 따라 기존 실태조사 시기('20→'23→'26)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전 조사를 거쳐 마련된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 조사를 실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 적용례와 같이 최초 실태조사 시행 연도를 다음 실태조사 예정일인 2026년으로 명확히 표시 필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정수용) 폭력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조사·공표하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써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 다만, 조사 주기(2년 또는 3년)는 행정효율성,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